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85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1. 27.

발 의 자 : 박주민 · 권인숙 · 김홍걸
남인순 · 배진교 · 양이원영
유정주 · 윤미향 · 이수진^(비)
장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「형법」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‘인공임신중절수술’을 ‘인공임신중단’으로 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·수술 등의 의학적 방법으로 임신을 종결하는 것으로 규정함(안 제2조제7호).
- 나.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대한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함(안 제12조).
- 다.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함(안 제14조).

참고사항

이 법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형법」(의안번호 제584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 중 “인공임신중절수술”을 “인공임신중단”으로, “태아가”를 “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 태아가”로, “수술을”을 “행위를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임산부의 인공임신중단에 관한 사항

제12조의 제목 중 “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”를 “생식건강 증진을 위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피임교육 및 홍보
2. 임신·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심리지원
3. 인공임신중단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
4. 그 밖에 생식건강 증진과 관련된 사업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보장) 임신의 유지 또는 중절에 관한 임

산부의 자기결정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인공임신중단 허용 범위) 의사는 임신부 본인의 동의를 받은
경우에만 인공임신중단을 할 수 있다.

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단 허용 범위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단을 실시한 의사

제28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6. (생략) 7. “ <u>인공임신중절수술</u> ”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<u>수술</u> 을 말한다. 8. ~ 12. (생략) 제7조(모자보건기구의 설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. 1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- <u>인공임신중단</u> ----- <u>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 태아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행위를</u> ----- --. 8. ~ 12. (현행과 같음) 제7조(모자보건기구의 설치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. 1. (현행과 같음) <u>1의2. 임신부의 인공임신중단에</u>

2. ~ 6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12조(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14조(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

관한 사항

2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) <삭제>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피임교육 및 홍보

2. 임신·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심리지원

3. 인공임신중단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

4. 그 밖에 생식건강 증진과 관련된 사업

제13조(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보장)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관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.

제14조(인공임신중단 허용 범위)

한계)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.

1.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(優生學的)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
2.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
3. 강간 또는 준강간(準強姦)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
4.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
5.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인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
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·실종·행방불명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

의사는 임신부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.

그 수술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,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.

제26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신 설>

1. (생 략)

3. · 4. (생 략)

② · ③ (생 략)

제28조(「형법」의 적용 배제)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「형법」 제269조제1항 · 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.

제26조(벌칙) ① -----

-----.

1.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단 허용 범위를 위반하여 인공 임신중단을 실시한 의사

2. (현행 제1호와 같음)

3. · 4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